

□ **관리원칙**

1. 거동불편자: 「의료법」에 따른 요양병원, 정신병원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)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
2. 보건소는 거동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
 - ① 요양병원, 정신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
 -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중인 고령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촉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
 - ③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기관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접종
 - ④ 사회복지시설 촉탁의가 개인자격인 경우와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
 - *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국가지원으로 협조할 경우 촉탁의를 통한 접종이 가능하며,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
 - ⑤ 사회복지시설 촉탁의는 가급적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권고

○ **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**

-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란 「의료법」에 따른 요양병원, 정신병원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)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만 65세 이상인 자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요양병원 정의
 - 요양병원 :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, 제3조의2)
 - 정신병원 : 「의료법」에 따른 정신병원
-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1항) 중 촉탁의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
 - 노인의료복지시설
 - 노인요양시설 : 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)
 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·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)
 - 노인주거복지시설
 - 양로시설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)
 - 장애인거주시설: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 (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[별표4])
 - 정신요양시설: 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,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[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]을 포함한다]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(「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2)
 - 노숙인재활시설: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「노숙인복지법」 제16조3)
 - 노숙인요양시설: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「노숙인복지법」 제16조4)